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국토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12월 31일, 서범수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 2025년 1월 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5.2.18.)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025.12.9.)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국회의원 서범수)

현행법은 건설기계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설기계의 검사시설 및기술능력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검사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단법인 형태의 공공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등이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검사대행기관 지정공고에 따라 안전검사를 대행하는 기관에 불과하여 건설기계 안전관리 전담조직으로서 안전관리 역할을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승계한 특수법인으로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을 설립하고, 건설기계의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건설기계 사고 시 조사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부여하여 건설기계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개정안은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특수법인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이하 “건설기계안전원”이라 함)으로 개편·설립하여 건설기계에 대한 검사

- 안전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으로, 건설기계의 검사, 형식승인 및 신고, 타워크레인
의 검사대행 총괄관리, 안전점검 및 사고조사 등의 주요 업무를 하고
있고, 정원은 221명이며, 2025년 예산은 약 265억원으로 검사 수수료가 주 수입원임.

건설공정의 복잡화·대형화와 자동화 공정 도입으로 건설기계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건설기계로 인한 위험 발생도 증가하고,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 관련 사고와 그로 인한 인명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현재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형식승인·신고 및
검사, 사고조사 등 건설기계 전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이
없고,

공공기관으로서 건설기계 검사 및 확인·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대한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국토안전관리
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타 안전 관련 공공기관과 달리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아, 그 역할을 건설기계 안전관리 전반으로 확대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개정안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건설기계법」에 근거를 둔 특수법인으로 개편하여, 건설기계에 대한 검사·안전관리 업무와 건설기계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건설기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가 요구되는 최근 상황을 고려하면, 개정안과 같이 관련 공공기관의 전문성 활용 및 역할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건설기계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4. 대체토론 요지

(생략)

5. 소위원회 심사내용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 : 권영진)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서범수의원(2건)과 윤재옥의원(2건)이 각각 대표발의한 네 건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함.

6. 찬반토론 요지

(생략)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내용을 반영함.